

# 법학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 내규 제31조에 의한 계절학기 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개설시기)

계절학기 수업은 방학 중에 실시한다.

## 제3조 (수강대상 등)

- ①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대상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- ② 본 대학원장은 개설되는 교과목에 따라 수강생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.

## 제4조 (교과목개설)

- ① 교과목은 학생의 수요와 담당교수의 현황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장이 개설한다.
- ② 교과목 개설의 기준이 되는 강좌 당 수강인원은 10명으로 한다.
- ③ 본 대학원장은 매 학기 기말시험 기간까지 개설교과목의 명칭, 담당교수의 성명,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강생의 범위,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취득학점)

- ① 매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.
- ② 수강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취득학점 수,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강생의 범위에 대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야 한다.
- ③ 본 대학원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협용할 수 있다.

## 제6조 (등록절차)

- ①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등록절차를 마친 학생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없다.

## 제7조 (수강료 및 반환기준)

- ①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료는 학부 기준을 준용한다.
- ② 계절학기 등록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[별표1] 계절학기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.

## 제8조 (강의시간)

- ① 계절학기 수업의 강의는 기말시험 종료 후 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1학점 당 강의는 16시간 이상으로 한다.

## 제9조 (시험)

- ① 매 계절학기 수업의 시험은 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② 수업시간의 2/3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## 제10조(수강철회)

- ① 수강철회는 전체 수업의 5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에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수강철회 등으로 인하여 전체수강인원이 10명인 경우 더 이상의 수강철회는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11조 (성적평가 및 처리)

계절학기 수업의 평가방법은 정규 학기의 평가 방법과 같으며,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한다.

제12조 (성적 인정)

- ①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장학사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에만 산입한다.
- ② 계절학기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

제13조 (주관부서)

계절학기 주관부서는 본 대학원으로 한다.

제14조 (다른 규정의 적용)

- ① 재수강의 경우 본 대학원 내규 제37조를 적용한다.
-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 제 규정에 의하며, 본 대학원 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계절학기 수강료의 반환기준

**계절학기 수강료의 반환기준**  
(법학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시행세칙 제7조 관련)

반환기준	반환금액
수업개시일 전까지	전액 환불
수업개시일 부터 1/5 경과 전	수강료 2/3 환불
수업개시일 1/5 경과 후	반환하지 아니함